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4.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총 무 과]

제 안 설명서

설명자: 총무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 포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한국방송대학교 설치령」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조문을 변경 하였습니다.(안 제14조제2항)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제7항을 삭제하고 제8항 특별 포상휴가일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라 현행 5일 이내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 2022년 3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 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822028
----------	----------

제출년월일: 2022. 4. 1.

제출자: 달서구청장
(총무과장)

1. 제안이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특별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과 충복되는 조항 삭제(현행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 나. 상위법 근거조문 변경(안 제14조제2항)
- 다. 특별 포상휴가 일수 확대(안 제14조제5항)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2. 3. 4.~3. 24.) 결과: 의견 없음
- 2) 비용추계서: 비대상
- 3)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
 2.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0일 이내)
 3.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단,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 이내)
- ④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6조제1항)” 을 “(제14조제1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u> <u>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u> <u>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u> <u>③ 삭 제</u> <u>④ 삭 제</u>	<u><삭 제></u>
<u>제15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u> <u>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u>	<u><삭 제></u>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풍해 · 수해 ·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

제1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 ⑥ (생 략)

⑦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⑧ 소속기관의 장은 주요 시책, 현안사업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 제20조 (생 략)

-----.

③ · 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삭 제>

⑤ -----

연간 10일 -----

-----.

제15조 ~ 제18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⑤ 생략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⑦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⑯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⑫ 생략

⑯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 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본다.